

고서분류법의 발전과 적용 古書分類法の發展과 適用

金 田 培

- 一. 序言
- 二. 古書分類法
 - I. 七略
 - II. 七志
 - III. 七錄
 - IV. 四庫全書總目

- V. 四部分類法の評價
- 三. 古書分類原則
 - I. 一般準則
 - II. 特殊準則
- 四. 結論

1. 서 언(序言)

고서(古書)는 단순(單純)한 고전적(古典籍)에 불과(不過)한 것이 아니고 과거(過去) 선인(先人)들의 모든 학술(學術) 활동(活動)의 총화(總和)로서 동양학(東洋學) 또는 한국학(韓國學) 연구(研究)의 기본자료(基本資料)일 뿐 아니라 고본(稿本) 원본(原本) 희구본(稀覯本) 선본(善本) 또는 판본 등 인쇄문화사(印刷文化史) 연구(研究)의 측면(側面)에서도 귀중(貴重)한 입증자료(立證資料)가 되는 문화재(文化財)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資料)들을 무질서하게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意味)가 없다. 필요(必要)한 사람이 활용(活用)하기 쉽도록 유별(類別)하고 통정(統整)해서 서목(書目)(목록(目錄))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서목(書目)을 편성(編成)하는데는 일정(一定)한 항목(項目)과 분류원칙하(分類原則下)에 구분(區分)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원칙(原則)을 고서(古書) 분류법(分類法)이라 한다.

고서(古書) 분류법(分類法)이란 일정(一定)한 규정(規程)이 아니고 이용자(利用者)와 봉사자(奉仕者)가 자료(資料)의 성격(性格)에 따라서 상호이해(相互理解)가 통(通)하는 범위내(範圍內)에서 이루어진 약속(約束)이라고 하면 아마 납득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고서(古書)의 분류(分類)가 제각기 무질서하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필요(必要)한 자료(資料) 섭렵에 적지 않은 불편(不便)을 초래할 것이며 많은 시간(時間)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옛부터 사용(使用)되어 온 고서분류법(古書分類法)을 개관(概觀)하고 일반적(一般的)으로 적용된 분류원칙(分類原則)을 도출(導出)하여 고서(古書)의 목록편찬(目錄編纂)과 통정(統整)에 기여토록하며 일반 고서이용자(古書利用者)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活用)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고서(古書)의 종류(種類)와 수(數)는 많다. 이 많은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기 위하여는 목록사용(目錄使用)에 익숙하여야 되고,

목록(目錄)을 활용(活用)하자면 고서(古書)의 분류원칙(分類原則)에 대한 이해(理解)없이는 인난(因難)하다.

목록학(目錄學)은 학문(學問) 중(中)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며, 서목(書目)의 이용법(利用法)에 익숙하지 않고는 학문연구(學問研究)는 성과(成果)가 적을 것이므로 그 중요성(重要性)을 다시 한번 강조(強調)해둔다.

2. 고서분류법(古書分類法)의 개관(概觀)

동양(東洋)의 고서분류법(古書分類法)은 다종다양(多種多樣)하다. 그 중 중요(重要)한 것을 들면 칠분법(七分法), 사분법(四分法), 개수사분법(改修四分法) 또는 독자적(獨自) 전개법(展開法) 등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이하에서 칠분법(七分法)의 시초인 「칠략(七略)」으로부터 대표적(代表的)인 사분법(四分法)인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까지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개관(概觀)하고,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을 중심(中心)으로 분류(分類)의 원칙(原則)과 한계(限界)를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I. 칠략(七略)

오늘날 알려진 동양(東洋) 최고(最古)의 분류법(分類法)으로 전한말(前漢末) 류흠(劉歆)이 완성(完成)한 것이다.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의(依)하면 진시황(秦始皇)의 갱유분서(坑儒焚書)로 고전의 수(數)가 적어지자 전한말(前漢末)의 성제(成帝)가 천하에서 유서(遺書)를 구(求)하여 궁정문고(宮廷文庫)인 추부(秋府)에 소장(所藏)케한 다음 광록대부(光祿大夫) 류향(劉向)으로 하여금 주재(主裁)케 하였는데 향(向)은 매책(每冊)마다 교정(校訂)이 끝나면 그 편목(篇目)을 적고 지의(旨意)를 활록(撮錄)하여 상주(上奏)하였다.

이것이 바로 각서(各書)의 서록(敍錄)이며, 이것을 정리하여 「별록(別錄)」 20권(卷)을 편집(編輯)하였다.

향(向)이 죽은 뒤 그의 아들 흠(歆)이 부업(父業)을 이어 「칠략(七略)」 7권(卷)을 완성(完成)하였다. 흠(歆)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서록(敍錄)을 전적(典籍)의 종류(種類)에 따라 편집(編輯)한 것으로 동양(東洋) 최고(最古)의 유별(類別) 목록(目錄)이며, 분류법(分類法)의 효시(嚆矢)이다.

칠략(七略)은 「집략(輯略) 육예략(六藝略) 제자략(諸子略) 시부략(詩賦略) 병서략(兵書略) 수술략(數述略) 방기략(方技略)」으로 크게 구분(區分)하였다. 여기에서 육예(六藝)는 육경(六經)을 뜻하며, 병가략(兵家略)이 제자(諸子)에 속(屬)하지 않고 독립(獨立)된 것은 춘추시대(春秋時代)를 거쳐 진대(秦代)에 이르기까지 왕관(王冠)의 무비(武備)가 매우 존숭시(尊崇視)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 칠지(七志)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 의하면 「칠지(七志)」는 송(宋)나라 비서승왕검(秘書丞王儉)이 목록(目錄)을 편찬(編纂)한 것인데 30권(卷) 혹은 40권(卷)으로 전(傳)해지고 있

으며, 그 後 보주(補註)한 것은 70권(卷)이라고 한다.

그 내용(內容)은 전(傳)해지지 않고있으나 전기서(前記書)에 의하면, 「경전지(經典志) 제자지(諸子志) 문한지(文翰志) 군서지(軍書志) 음양지(陰陽志) 술예지(術藝志) 도보지(圖譜志)」로 크게 구분(區分)하였는데 이것은 칠략(七略)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칠략(七略)의 「집략(輯略)」을 빼고 「도보지(圖譜志)」를 신설(新設)함으로써 명실(名實)공(共)히 칠분법(七分法)을 완성(完成)하였으며, 석도(釋道)의 양교(兩教)를 부록(附錄)하였다.

칠지(七志)에서는 칠략(七略)을 근거(根據)하여 육예(六藝)를 경전(經典), 시부(詩賦)를 문한(文翰), 병서(兵書)를 군서(軍書), 수술(數術)을 음양(陰陽), 방기(方技)를 술예(術藝)로 각각(各各) 개칭(改稱)하고, 제자(諸子)의 명칭(名稱)만을 그대로 인용(引用)했다.

도(道)·불양교(佛兩教)를 부록(附錄)한 것은 모두 방외(方外)의 종교(宗教)이므로, 아직 종교(宗教)로서 인정(認定)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칠록(七錄)

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 의(依)하면 량(梁)나라 때에도 관수목록(官修目錄)에는 사분법(四分法)이 주용(主用)되었으나 완효서(阮孝緒)가 칠분법(七分法)인 「칠록(七錄)」을 편찬하므로써 양(兩)분류법이 병용(並用)되었다고 한다. 「광홍명집(廣弘明集)」 소전(所傳)의 완효서(阮孝緒)의 칠록자서(七錄自序)에 의하면, 칠록(七錄)의 내용(內容)은 「경전록(經典錄) 기전록(紀傳錄) 자병록(子兵錄) 문집록(文集錄) 술기록(術技錄) 불법록(佛法錄) 선도록(仙道錄)」으로 크게 구분(區分)되었으며, 왕검(王儉)의 칠지(七志)와 유흠(劉歆)의 칠략(七略)을 참작(參酌)해서 만들었다.

록(七錄)은 왕(王)·유(劉)의 칠분법(七分法)을 짐작(斟酌)하였다고도 하나, 사분법(四分法)의 영향(影響)을 받아 경전록(經典錄) 기전록(紀傳錄) 자병록(子兵錄) 문집록(文集錄)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순위(順位)로 배정(配定)하여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과 비슷하게 고안(考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칠지(七志)에서는 선도후불(先導後佛)로 부록(附錄)한 것을 칠록(七錄)에서는 선불후도(先佛後道)로 전개(展開)한 것은 당시(當時)의 시대상(時代相)을 잘 적용(適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칠록(七錄)은 칠분법(七分法) 중 가장 우수한 역작(力作)이라 호평(好評)된다.

IV.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진초(晉初)의 순□(荀□)이 편찬한 「중경신부(中經新簿)」가 내용(內容)이 현존(現存)하는 최고(最古)의 사분법(四分法)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사분법(四分法)의 효시(嚆矢)는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일일(逸佚)되어 현존(現存)하는 것은 없다.

순□(荀□)이 중경부(中經簿)를 근거(根據)하여 다시 편찬(編纂)하였다는 신부(新簿)의 분류법(分類法)은 다음과 같다.

갑부(甲部) : 기육예급소학(紀六藝及小學) 등서(等書)

을부(乙部) : 유고제자가(有古諸子家) 근세자가(近世子家) 병서(兵書) 병가(兵家) 술수

(術數)

병부(丙部) : 유사기(有史記) 구사(舊事) 황람부(皇覽簿) 잡사(雜事)

정부(丁部) : 유시부(有詩賦) 도찬(圖贊) 급가서(汲冢書)

사분법(四分法)의 각부(各部) 명칭(名稱) 경사자집(經史子集)은 사용(使用)하지 못했지만 분류상(分類上)의 차서(次序)인 갑을병정(甲乙丙丁) 사부(四部)를 사용(使用)하고 있으니 칠분법(七分法)에서 사분법(四分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過渡期的) 형태(形態)라 하겠다.

사분법(四分法)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의 토대는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서 비로소 확립(確立)되었는데, 이는 동서(同書)에 의(依)하면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기본(基本)으로 하고 류목(類目)의 설정(設定)에 있어서는 구록(舊錄)을 비롯하여 사기(史記), 한서(漢書), 칠지(七志), 칠록(七錄) 등을 참고(參考)하여 정선(精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內容)은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의 사부(四部)를 설정(設定)하고 「도경(道經) 불경(佛經)」을 부록(附錄)하였다.

그러나, 도(道)·불(佛)의 이경(二經)을 방외(方外)의 교(敎)라 하여 사부(四部)에 포함(包含)시키지 않고 부록(附錄)한 것과 분류(分類)의 일관성(一貫性)이 결여된 곳과 개념(概念)이 혼잡(混雜)하고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점도 있다.

혜봉(天惠鳳) 교수(敎授)에 의(依)하면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의 발전(發展)은 청대(淸代)에 와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200권(卷)의 정리에 적용(適用)되므로서 그 절정(絶頂)에 이르렀다 한다.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청(淸) 고종(高宗)의 명(命)으로 건륭(乾隆)38年(1773)에서 同 47年(1782)까지 10年間에 걸쳐 기윤(紀昀) 육석태(陸錫熊) 손사의(孫士毅) 등을 비롯한 재직자 360名 초서(抄胥) 1, 500名이 동원(動員)되어 전국(全國)에서 선정(選定) 또는 채진(採進)케한 선서(善書)를 선사성서(繕寫成書)하고, 내정사각(內廷四閣) 중의 하나인 문연각(文淵閣)에 소장(所藏)한 중국서적수집사상 실(實)로 공전위관(空前偉觀)의 일대 총서(一大總書)이며, 이어 육부(六部)가 더 분사(分寫)되어 내정사각(內廷四閣) 중 다른 삼각(三閣)에 각각(各各) 일부(一部)씩 소장(所藏)하였다고 한다. 경적지(經籍志)의 수서 사부분류법(隨書四部分類法)과 비교(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A. 경 부(經 部)

경부(經部)가 유교경전(儒敎經典)과 주석서(註釋書)의 분류(分類)를 위주(爲主)로 하고 소학(小學)과 그 입문서(入門書)인 훈고서(訓詁書) 자서(字書) 운서(韻書)를 병입(並入)시킨 원칙(原則)과 경부(經部)를 각각(各各) 10류(類)로 구분(區分)한 것은 같으나, 위서류(緯書類)를 삭제(刪除)하고 오경총의류(五經總義類)를 신설하였으며,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은 예기(禮記)에 속(屬)해 있었으나 논어(論語)·맹자(孟子)에 함께 일류(一類)(사서류(四書類))를 별립(別立)했다.

B. 사 부(史 部)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는 13類로 나누고 있으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은 15類이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는 없고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의 사부(史部)에 신설

(新設)된 것은 「기사본미류(紀事本帽類) 별사류(別史類)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사초류(史鈔類) 시령류(時令類) 사평류(史評類)」 등이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 있던 것이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의 사부(史部)에서 산거(刪去)된 것은 「기거주(起居注) 의주(儀注) 형법(刑法) 구사(舊事)」 등이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의 류문(類門)을 그대로 살리고 명칭(名稱)만을 바꾼 것은 고사류(古史類)→편년류(編年類)로, 잡전(雜傳)→전기(傳記)로, 패사(霸史)→재기(載記)로, 부록(簿錄)→목록(目錄)으로 한 것이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는 있으나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에 빠진 류문(類門)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계류(譜系類)인데,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에서는 이를 자부(子部)에 분류(分類)하고 있다.

C. 자 부(子 部)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와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이 각각 14類門으로 구분(區分)되어 류문수(類門數)가 같은 것은 동일(同一)하나 다음과 같은 이동(異同)이 있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 없고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에만 신설된 류문(類門)은 「예술 보록(譜錄) 류서(類書) 석가류(釋家類)」 등이다.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서 독립(獨立)된 류문(類門)이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에 있어 一類로 통합(統合)된 것은, 명가(名家)·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의 각류문(各類門)이 잡가류(雜歌類)로, 천문류(天文類) 역수류(曆數類)가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로, 도가(道家)와 도경(道經)이 도가(道家)로 각각(各各) 통합(統合)되었다.

류문(類門)은 그대로 살리고 명칭(名稱)만 바꾼 것은 의방(醫方)을 의가(醫家)로, 오행(五行)을 술수(術數)로 바꾼 것이 이에 해당(該當)한다.

D. 집 부(集 部)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서는 3類로 구분(區分)되었으나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에서는 5類로 구분(區分)하였는데 증가된 二類는 시문평류(時文評類)와 사곡류(詞曲類)이다.

V.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의 평가(評價)

중국(中國)에서 시발(始發)한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은 자체(自體)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長短點)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장점(長點)>

1. 분류조건(分類條件)이 매우 간편하여 기억(記憶)하기 쉽고 정리(整理)가 간편하며,
2. 전통적(傳統的) 동양문화(東洋文化)를 분산(分散)시키지 않고 원형(原形) 그대로 집약적(集約的)으로 조직(組織)할 수 있으며,
3. 고서보존(古書保存) 위주(爲主)의 각종(各種) 문고(文庫)와 동양학(東洋學)의 전문(專門) 도서관(圖書館)에 적합(適合)하며,
4. 동양학(東洋學)에 관(關)한 지식(知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서(司書)가 아니라도 자료(資料)검색이 가능(可能)하다.

<단점(短點)>

1. 유문배열(類門排列)이 경학(經學)을 존중(尊重)하고 중국(中國)을 종주(宗主)로 하는 명분위주(名分爲主)의 분류(分類)이므로 사리(事理)에 부적합(不適合)한 점(點)이 많다.

2. 류문(類門)이 주제(主題)의 이론적(理論的) 체계(體系)로 전개(展開)되어 있지 않고 체재위주(體裁爲主)의 전통적(傳統的) 방법(方法)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상(以上)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많은 장단점(長短點)을 예거할 수 있으나 우선 생략하기로 한다.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대한 비판은 명대(明代)에서부터 시작(始作)되어 청대(清代)에 와서도 많은 개수작업(改修作業)이 이루어졌다.

개수작업(改修作業)이란 사고전서총목(斯盧全書總目)의 미비점(未備點)이나 결점(缺點)을 보완(補完)하고 분류(分類)하고자 하는 자료(資料)의 조직(組織) 성격(性格)에 따라 산거보완(刪去補完)하는 작업(作業)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부(四部分類法)를 도입하여 사용(使用)하였으며, 「루판고(鑲板考)」 「규장각한국본목록(奎章閣寒國本目錄)」 등이 있어 해당(該當)되며, 최근(最近)에는 「장서각소장(藏書閣所藏) 한국본총목록(本總目錄)」이 발간(發刊)된바 있다.

3. 고서분류준칙(古書分類準則)

천혜봉교수(千惠鳳教授)에 의(依)하면 고서분류(古書分類)의 준칙(準則)을 일반준칙(一般準則)과 특수준칙(特殊準則)에 따라 구분(區分)하였는데 이하(以下)에서 千교수의 소론(所論)에 따라 분류준칙(分類準則)을 간략하게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I. 일반원칙(一般原則)

고서(古書)를 분류(分類)함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留意)하여야 한다.

- 가. 최대(最大)한의 이용(利用)을 위(爲)한 분류(分類)
- 나. 분류(分類)의 기본표준(基本標準)은 분류법(分類法)의 조직원칙(組織原則)에 따라 일관성(一貫性)있는 분류(分類)
- 다. 저자(著者)의 의도(意圖)와 목적(目的)에 따라야 함.
- 라. 서명위주(書名爲主)의 분류(分類)를 지양(止揚)하여야 함.
- 마. 주제(主題)의 비교(比較)·찬반(贊反)·대립(對立)의 경우에는 저자(著者)가 찬성(贊成) 또는 옹호(擁護)하는 곳에 분류(分類)
- 바. 주제(主題)의 원인(原因)·결과(結果)·기원(起源)·파생(派生)의 경우에는 영향(影響)을 받은 곳에 분류(分類)
- 사. 번역(翻譯) 주석(註釋) 안설(按設) 비평(批評)의 저서(著書)는 원저작(原著作)이 분류(分類)되는 곳에 분류(分類)
- 아. 분류표(分類表)에 없는 주제(主題)는 가까운 주제(主題)에 넣거나 새로운 항목(項目)을 설정함(다만 색인에도 추증(追證)하여야 함)

II. 특수준칙(特殊準則)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분류(分類)표에 따라 각(各) 류목(類目)의 분류(分類) 방법(方法) 및 한계(限界)를 개관(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A.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분류법(分類法)

○ 경 부(經 部)

역류(易類) · 서류(書類) · 예류(禮類)(주례(周禮) · 의례(儀禮) · 예기(禮記) · 삼례통의(三禮通儀) · 통례(通禮) · 잡례(雜禮))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오경총의류(五經總義類) · 사서류(四書類) · 약류(藥類) · 소학류(小學類)

○ 사 부(史 部)

정사류(正史類) · 편년류(編年類) · 기사본말류(記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잡사류(雜事類) · 소령주의류(小令奏議類)(조령(詔令) · 주의(奏議))

전기류(傳記類)(성현(聖賢) · 명인(名人) · 총록(總錄) · 잡류(雜類) · 별록(別錄))

사초류(史鈔類) · 재기류(載記類) · 시령류(時令類) · 지리류(地理類)(총지(總志) · 도(都) · 회군현(會郡縣) · 하거(河渠) · 변방(邊防) · 산천(山川) · 고적(古蹟) · 잡기(雜記) · 유기(遊記) · 외기(外記)) · 직관류(職官類)(관제(官制) · 관잠(官箴))

정서류(政書類)(통제(統制) · 전례(典禮) · 방계(邦計) · 군정(軍政) · 법령(法令) · 고공(考工))

목록류(目錄類)(경적(經籍) · 금석(金石))

사평류(史評類)

○ 자 부(子 部)

유가류(儒家類) · 병가류(兵家類) · 법가류(法家類) · 농가류(農家類) · 의가류(醫家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추보(推步) · 산서(算書))

술수류(術數類)(수학(數學) · 점후(占候) · 상택상묘(相宅相墓) · 점복(占卜) · 명서(命書) · 상서(相書) · 음양오행(陰陽五行) · 잡기술(雜記術))

예술류(藝術類)(서화(書畫) · 금보(琴步) · 전각(篆刻) · 잡기(雜記))

보록류(譜錄類)(기용(器用) · 식보(食譜) · 초목(草木) · 조수충어(鳥獸虫魚))

잡가류(雜家類)(잡학(雜學) · 잡고(雜考) · 잡설(雜說) · 잡품(雜品) · 잡찬(雜纂) · 잡편(雜編))

류서류(類書類) · 소설가류(小說家類)(잡사(雜事) · 이문(異問) · 쇄어(瑣語))

석가류(釋迦類) · 도가류(道家類)

○ 잡 부(雜 夫)

초사류(楚辭類) · 별집류(別集類) · 총집류(總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사전류(詞典類) · (사집(詞集) · 사전(詞選) · 사화(詞話) · 사보(詞譜) · 사운(詞韻) · 남북곡(南北曲))

B. 경부각류(經部各類)의 분류(分類)준칙(準則)

1. 역 류(易 類)

음양이원(陰陽二元)으로 천지간(天地間)의 만상(萬象)을 설명(說明)하는 현비(玄秘)의

뜻과 유도(儒道)의 학(學)이 겸비(兼備)된 동양(東洋) 으뜸의 철학(哲學)으로서 주대(周代)에 대성(大成)했으므로 주역(周易)이라고 한다. 본시(本始) 중국상대(上代)의 복희씨(伏羲氏)가 그린 괘(卦)에 대(對)하여 주(周)의 문왕(文王)이 총설(總說)하여 괘사(卦辭)라 하고, 주공(周公)이 이 육효(六爻)에 대(對)하여 세설(細說)하고 효사(爻辭)라 했는데, 공자(孔子)가 여기에 심오한 원리를 붙여 십익(十翼)을 가(加)하였다 한다.

역학(易學)이라 하더라도 유도(儒道)의 학(學)을 위주(爲主)로 한 것과 그 주소논설(注疏論說) 및 편장연구서(篇章研究書)만을 이에 분류(分類)하는데 「역학도설(易學圖說)」 「주역언해(周易諺解)」 「주역강의(周易講義)」 「태극도설진해(太極圖說集解)」 등이 이에 속한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치우쳐 길흉(吉凶)을 추급(追及)하고 인사(人事)의 득실(得失)을 징험(徵驗)한 내용(內容)은 자부(子部) 도가류(道家類)에 분류(分類)한다.

도가(道家)에서 주역(周易)의 효상(爻象)을 가차(假借)하여 작단(作丹)의 뜻을 논(論)한 것은 자부(子部) 도가류(道家類)에 분류(分類)한다.

2. 서 류(書 類)

서경(書經)은 우하상주(虞夏商周)의 정사관계(政事關係) 문서(文書)를 공자(孔子)가 책(冊)으로 편찬(編纂)한 것인데,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것이므로 고대사(古代史)에 해당(該當)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책을 엮은 본래(本來)의 목적(目的)이 성군(聖君)이나 현주(賢主)의 사적(事蹟) 및 이상적(理想的)인 정사(政事)를 기록(記錄)하여 유가(儒家)의 정치(政治)에 구감(龜鑑)이 되는 성전(聖典)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경부서류(經部書類)에 분류(分類)한다.

이 경(經)은 「서(書)」 「상서(尙書)」 「서경(書經)」 「서전(書傳)」이라 통칭(通稱)되었으므로 이러한 서명(書名)이 붙은 책과 서경(書經)의 주소논설(注疏論說)·편장연구서(篇章研究書) 또는 서사(書辭)도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3. 시 류(詩 類)

유가경전(儒家經典)의 하나로서 은대(殷代)부터 춘추시대(春秋時代)까지 수백년(數百年)동안 조정(朝廷)과 지방(地方)에서 불리었던 풍(風) 아(雅) 송(頌) 등 311편(編)을 모은 중국(中國) 최고(最古)의 시가집(詩歌集)이기는 하나 본래(本來)의 편찬(編纂) 목적(目的)이 유교경전(遺教經典)으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경부(經部)에 분류(分類)하여야 한다.

시류(詩類)에는 모시(毛詩), 삼가시(三家詩)(로시(魯詩)·한시(韓詩)·제시(齊詩))가 있는데 삼가시(三家詩)는 후한(後漢) 이후(以後) 모시(毛詩)가 성행(盛行)됨에 따라 쇠잔되어 현재(現在)는 고문헌(古文獻)에 겨우 부분적(部分的)으로 전(傳)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경강의(詩經講義)」 「시경언해(詩經諺解)」 「시초(詩抄)」 등과 중국(中國)의 「모시주소(毛詩註疏)」 「시집(詩緝)」 「흠정시경전설회찬(欽定詩經傳說彙纂)」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4. 예 류(禮 類)

예류(禮類)는 삼례(三禮)가 주체(主體)이며, 삼례통의(三禮通儀) 통례(通禮)와 잡례(雜禮)가 부수(附隨)되었다.

주례(周禮)는 주관(周官)이라고도 했으며, 주(周) 나라의 국가제도(六官)를 분류설명(分類說明)한 삼례(三禮) 中의 하나이다.

「주례정화(周禮精華)」 「주례주소(周禮註疏)」는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의례(儀禮)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하여 중국(中國) 고대사회(古代社會)에 있어서의 선비와 제후(諸侯)가 지켜야 할 사회적(社會的) 의식(儀式)을 다룬 삼례(三禮) 中의 하나이다. 「의례통고(儀禮通考)」 「의례주소(儀禮註疏)」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예기(禮記)는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에 대(對)하여 이론(理論)과 실제(實際)를 설명한 삼례(三禮) 중(中)의 하나로서 대대례(大戴禮)와 소대례(小戴禮)가 있다. 「예기(禮記)」 「예기주소(禮記註疏)」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삼례통의(三禮通儀)는 삼례(三禮)에 대한 총괄적인 전의(傳義)를 말한다.

통례(通禮)는 삼례(三禮)와 역대(歷代)의 예제(禮制)에 대(對)한 총괄적(總括的)인 전의(傳儀)를 말한다.

잡례(雜禮)는 가례(家禮)·향례(鄉禮) 등의 사가의주(私家儀註)로서 경부(經部) 잡례(雜禮)의 속(屬)에 분류(分類)하며, 역대(歷代) 조정(朝廷)의 제도(制度)인 전례(典禮)는 잡례(雜禮)와 분리(分離)하여 사부(史部) 전례(典禮)의 속(屬)에 분류(分類)하는데 유의(留意)하여야 한다.

5. 춘추류(春秋類)

중국(中國) 로(魯) 은공(隱公) 1년(722 B.C)에서 애공(哀公) 14년(481B.C)까지의 12代 242년간의 사적(事蹟)을 편년체(編年體)로 기록(記錄)한 것을 공자(孔子)가 윤리적(倫理的) 입장(立場)에서 수정비판(修正批判)을 가(加)하고 정아선악(正雅善惡)의 가치판단(價值判斷)을 내린 것으로, 교훈적(教訓的) 의도(意圖)가 시종일관(始終一貫)했다. 이것은 노(魯)나라의 역사(歷史)로 당연히 사부(史部)에 분류(分類)되어야 한다고 주장(主張)하기도 하나 사서(史書)로서의 이용(利用)보다 공자(孔子)의 교훈적(教訓的) 의도(意圖)가 커서 경(經)의 하나로 편입(編入)함이 타당하므로 경부(經部) 춘추류(春秋類)에 분류(分類)한다.

춘추(春秋)의 전석서(傳釋書)인 좌씨전(左氏傳), 공양전(公羊傳), 곡양전(穀羊傳)과 호씨전(胡氏傳)은 모두 춘추의 속(屬)에 분류(分類)되는데, 춘추삼전(春秋三傳)은 좌씨전(左氏傳), 공양전(公羊傳) 및 곡양전(穀羊傳)이 포괄(包括)된 것이고, 춘추사전(春秋四傳)은 삼전(三傳)에 호씨전(胡氏傳)이 첨가(添加)된 것이다.

6. 효경류(孝經類)

효경(孝經)은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효도(孝道)에 대(對)하여 한 말을 기록한 것으로서 정경(政經)과 주소논설(註疏論說)은 경부(經部) 효경류(孝經類)에 분류(分類)하나 개인의 효행록(孝行錄)은 사부(史部) 전기류(傳記類)에 분류(分類)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7. 오경총의류(五經總義類)

유학(儒學)에서 성인(聖人)의 술작(述作)으로 존중(尊重)되는 다섯가지 경서(經書)로서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예기(禮記)·춘추(春秋)를 말하는데 오경정문

(五更正門)의 합본(合本) 또는 오경총의집(五更總意集)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8. 사서류(四書類)

송(宋) 나라이 주자(朱子)가 하나의 학문적(學問的) 체계(體系) 밑에서 찬(纂)한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의 총칭(總稱)이며, 각경(各經)은 경부(經部) 사서류(四書類)의 각속(各屬)에 분류(分類)하고, 정경합각(政經合刻)과 총의(總義)는 총의(總義)의 속(屬)에 분류(分類)한다.

그러나 학용(學庸)은 대학(大學)에, 논맹(論孟)은 논어(論語)에 각각(各各) 분류(分類)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9. 락류(樂類)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는 락경(樂經)이 육경(六經)의 하나로 편입(編入)되어 있으나 그 이후(以後) 오경(五經) 십이경(十二經)에 모두 누락되었는데 그것은 그 후 락편(樂篇)이 산일(散佚)된데 기인한다. 근래(近來) 각서목(各書目)에 수록(收錄)된 경부(經部)의 락류(樂類)는 모두 후대인(後代人)의 저작(著作)이다.

10. 소학류(小學類)

아동(兒童)들이 한문(漢文)을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자전류(字典類)로서 훈고(訓詁) 자서(子書) 운서(韻書)에서 연원(淵源)되었으며 아동용 한자교습서(漢子敎習書)도 이에 포함(包含)된다.

훈고서(訓詁書)는 한자(漢子)의 뜻풀이를 주(主)로 하는 자전(字典)으로서 「이아(爾雅)」 「광아(廣雅)」 등이 이에 속(屬)하며, 자서(字書)는 자형(字形)과 조자(造字)의 해석을 주(主)로 하는 자전(字典)으로서 「설문해자(說文解字)」 「육서고(六書故)」 등이 이에 속(屬)하며

운서(韻書)는 음(陰)과 운(韻)의 표시를 주(主)로 하는 자전(字典)으로서 「홍무정운역(洪武正韻易)」 「광운(廣韻)」 등이 이에 속(屬)한다.

C. 사부각류(史部各類)이 분류준칙(分類準則)

1. 정사류(正史類)

정사(正史)는 기전체(紀傳體)의 체제(體制)로 엮어진 역사서(歷史書)를 말하며, 기전체사서(紀傳體史書)란 기(紀)·표(表)·지(志)·전(傳)의 체제와 순차로 엮어진 사서(史書)라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고려사(高麗史)」와 중국의 「십칠사(十七史)」 「이십일사(二十一史)」 「이십사사(二十四史)」 「이십오사(二十五史)」 「이십육사(二十六史)」는 모두 정사(正史)에 속(屬)한다.

정사(正史)를 훈석(訓釋), 음의(音義)한 것, 정사(正史)의 이동(異同)을 변정(辨正)한 것, 자구(字句)를 수정(修正)한 것, 주석서(註釋書), 번역서(翻譯書) 등은 모두 정사(正史)에 분류(分類)하여야 하며, 다만 관(官)의 인정(認定)을 받지 못한 사찬(私撰)의 사서중(史書中)에 정사(正史)의 체례(體例)를 갖춘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별사(別使)에 분류(分類)하여야 한다.

2. 편년류(編年類)

편년체사서(編年體史書)는 고사(古史)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최초(最初)의 정사(正史)인 사기(史記) 이전에 이며 이 편년체사서(編年體史書)가 편찬된바 있어서 붙여진 별칭(別稱)이며, 年 月 日 時의 순차(順次)로 서술된 사체(死體)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국조보감(國朝寶鑑)」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과 중국(中國)의 「자치통감(資治通鑑)」 「통감강목(通鑑綱目)」 「속자치통감목(續資治通鑑目)」 등은 모두 편년체사서(編年體史書)의례(例)이다.

3. 기사본말류(記事本末類)

기사본말체사서(紀事本末體史書)는 年代順으로 기술(記述)하는 편년체사서(編年體史書)의 단점(短點)을 보충(補充)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사건(事件)을 중심(中心)하여 이에 대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기술(記述)하는 사체(史體)이며, 이는 송(宋) 애추(哀樞)가 처음으로 편년체(編年體)인 「자치통감(自治痛感)」을 기사본말(記事本末)로 엮어 만든 「통감기사본말(痛感記事本末)」(42권(卷))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조야기문(朝野記聞)」 등과 중국(中國)의 「통감기사본말(通鑑紀事本末)」 「송사기사본말(宋史記事本末)」 「원사기사본말(元史紀事本末)」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좌전기사본말(左傳紀事本末)」 등은 모두 기사본말체사서(紀事本末體史書)에 속한다.

다만 기사(紀事)의 내용(內容)이 묘당(廟堂)과 군국(軍國)에 관(關)한 것으로 그 체례(體例)가 일사(一事)이 시말(始末)은 갖추었으나 一代의 전편(全編)이 아니거나, 한 때의 견문(見聞)을 기술(記述)한 일가(一家)의 사기(私記)인 유문규사(遺文舊事)는 기사본말류(記事本末類)에 분류(分類)하지않고 「잡사류(雜史類)」에 분류(分類)하여야 한다.

4. 별사류(別史類)

별사(別事)는 정사(正史)에 분류(分類)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사(雜史)에 소속(所屬)시킬 수도 없는 사서(史書)로서, 정사(正史)의 기초(起草)에 이용된 것, 정사(正史) 내용(內容)의 이동(異同)을 검교(檢校)하는데 이용(利用)될 수 있는 것 또는 고증(考證)에 호취(互取)된 즉(卽) 정사(正史)를 상보(相補)할 수 있는 사서(史書)를 이에 분류(分類)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조선태조고황제실기(朝鮮太祖高皇帝實記)」 「강목집요(綱目輯要)」 「동국사략(東國史略)」 「사기영선(史記英選)」 「역대사선(歷史私選)」 등과 「동관한기(東觀漢記)」 「동도사략(東都史略)」 「대금국지(代金國志)」 「글단국지(契丹國志)」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다만 별사류(別史類)는 편찬(編纂) 체례(體例)보다도 정사류(正史類)를 상보(相補)할 수 있는 독특(獨特)한 성질(性質)의 것으로서 반드시 그 체(體)의 사서(史書)만이 분류(分類)되는 것은 아니다.

5. 잡사류(雜史類)

잡사류(雜史類)는 우리나라에서는 야승류(野乘類)라고도 하는데, 묘당(廟堂)과 군국(軍國)에 관한 내용(內容)중 一代의 견문을 사기(私記)한 유문규사(遺文舊事)로서 고사

(古史)의 사적(史的) 고증(考證)이나 독사자(讀史者)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이에 분류(分類)한다.

우리나라의 「대동야승(大東野乘)」 「해동잡록(海東雜錄)」 「징비록(懲毖錄)」 「주자사실(鑄字事實)」 「천의소감(闡義昭鑑)」 「헌종조기사(憲宗朝記事)」 「강도일기(江都日記)」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남한일기(南漢日記)」 「강상문답(江上問答)」 등과 중국(中國)의 「정관정요(貞觀政要)」 「저궁구사(著宮舊事)」 「북수견문록(北狩見聞錄)」 「사북일록(使北日錄)」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잡사(雜史)는 사부분류(史部分類)에 있어 매우 가름하기 어려운 부문이어서 몇가지 문제점(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잡가류(雜歌類)의 잡설지속(雜說之屬)과의 혼돈(混沌)이며, 둘째, 소설가류(小說家類)의 잡사(雜事)·이문(異聞) 양속(兩屬)과의 혼돈이며, 셋째, 별사류(別史類)와의 분류(分類)한계를 규정하는 문제(問題) 넷째, 기사본말류(記事本末類)와의 분류(分類)한계에 대(對)해서도 유념(留念)하여야 한다. 잡가류(雜家類)·소설가류(小說家類)와의 관계(關係)는 해당류속(該當類屬)에서 설명(說明)하기로 하고 우선 별사류(別事類) 및 기사본말류(記事本末類)와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별사(別事)란 정사(正史)와 잡사(雜史)와의 중간에 처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상술한바와 같이 관찬(官撰) 및 원본정사(原本正史)를 다시 정제(整齊)한 것으로서 역조(歷朝)의 대정(大政)에 관계(關係)한 것은 별사(別事)에 해당(該當)하고, 어떤 사건(事件)의 시말(始末), 견문(見聞), 사담(史譚), 사적(史的)인 만필(漫筆), 잡록(雜錄) 등 사기(私記)는 잡사(雜史)에 분류(分類)한다.

사본말체(紀事本末體)는 사건(事件)을 중심(中心)하여 이에 대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기술(記述)하는 사체(史體)라고 상술(上述)한바 있는데, 그렇다고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로 위어진 것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하여야 하나 一代의 전편(全編)이 아니거나 한때의 견문(見聞)을 기술(記述)한 一家의 사기(私記)인 유모구사(遺文舊事)는 잡사류(雜史類)에 분류(分類)하여야 한다.

6.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조령(詔令)과 주의(奏議)는 매우 요긴(要緊)한 정무(政務)가 되는 천하(天下)의 대정(大政)인바, 조령(詔令)이란 천자(天子) 또는 왕(王)의 명령(命令)인 고조음(誥詔音)·전교(傳敎)·유시(諭示)·칙령(勅令)·책령(策令)·새서(璽書)·교지(教旨)·어찰(御札)·비답(批答)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훈사(訓辭)」 「어제경민음(御製警敏音)」 「균역청륜음(均役廳綸音)」 「수성륜음(守城綸音)」 「근장륜음(斤章綸音)」 「표충륜음(表忠綸音)」 등과 중국(中國)의 「상유합률향약전서(上諭合律鄉約全書)」 「비유지(批諭旨)」 「삼합성유관운(三合聖諭廣訓)」 등이 모두 이에 속하며, 주의(奏議)한 신하가 천자(天子)나 왕에게 주진(奏進)하고 시비를 조의(條議)하여 올린 주소(奏疏)·소답(疏劄)·상소(上疏)·봉사(封事)·탄음(彈音)·상계(狀啓)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동환봉사(東還封事)」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이문경공주의(李文經公奏議)」 「동현주의(東賢奏議)」 「송석곡봉사(宋石谷封事)」 등과 중국(中國)의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주자봉사(朱子封事)」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다만 조령(詔令)·주의(奏議)가 문장(文章)이 아름답다 하여 집부(集部)에 분류(分類)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모두 국가(國家)의 중요(重要) 정사(政事)인 정사(正史)와 관련

(關聯)이 있으므로 사부(史部)에 분류(分類)하여야 한다.

7. 전기류(傳記類)

인물(人物)의 사적(事蹟)을 적은 류서(類書)를 말하며, 一人의 시말(始末)을 기록(記錄)한 것은 전(傳)이라하고 一事의 시말(始末)을 서술(敘述)한 것은 기(記)라하여 이를 총칭(總稱)하여 전기(傳記)라 한다. 전기(傳記)는 범위(範圍)가 광범(廣範)하여 다종(多種) 다양(多樣)하게 분류(分類)되고 있으나 대개총전(大概叢傳)(록(錄))·별전(別傳)(錄)·잡록(雜錄)·계보(系譜)의 사종(四種)으로 대별(大別)한다.

총전(叢傳)은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말하며 총록(總錄)이라고도 하며, 대체(大體)로 명신록(名臣錄) 명사록(名士錄) 명유록(名儒錄) 명장전(名將傳) 고승전(高僧傳) 고사록(高士錄) 고일록(高逸錄) 행실록(行實錄) 삼강록(三綱錄) 충렬록(忠烈錄) 충효록(忠孝錄) 등이 모두 이에 속(屬)하며,

별전(別傳)은 개인(個人)의 사적(事蹟)을 적은 전기(傳記)로서 각전(各傳) 또는 별록(別錄)이라고도 하는데 전행상(傳行狀) 지상(誌狀) 년보실기(年譜實記) 언행록(言行錄) 추도록(追悼錄) 유사(遺事) 사실(事實) 등이 모두 이에 속(屬)하며,

록(雜錄)은 개인(個人)의 사적(史蹟)을 직접(直接) 적은 전기서(傳記書)는 아니지만 전기(傳記)와 밀접(密接)한 관련(關聯)을 맺고있는 一事의 시말(始末)을 서술(敘述)한 기록(記錄)인데, 대체(大體)로 전기적(傳奇的)인 성격(性格)이 있는 日記 記事 기록(記錄) 척독(尺牘) 등이 이에 해당(該當)되며, 「해석일록(海石日錄)」 「호종서순일록(扈從西巡日錄)」 등은 그 예(例)이다.

계보(系譜)는 한 씨족(氏族) 또는 한 가내(家內)의 씨보(氏譜) 가보(家譜) 보첩(譜牒) 세계(世系) 파보(波譜) 족보(族譜) 등이 이에 해당(該當)된다.

8. 사초류(史鈔類)

사초(史抄)는 어떤 저본(底本)에서 박취약존(博取約存)하고, 순람(循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초록(抄錄)한 것이므로 저본(底本)을 이석편찬(離石編纂)한 것이거나, 간삭(間削)한 것이거나, 문구(文句)를 채초(採樵)한 것이거나, 사초(詞抄)를 할렬(割裂)한 네가지 예(例)가 사초(史抄)의 기본(基本)이 된다.

우리나라의 「사기영선(史記英選)」 「조선왕조의 초존(抄存)」 「역사초(繹史抄)」 등과 중국의 「원사절요(元史節要)」 등이 이에 속(屬)한다.

9. 전기류(傳記類)

재기(載記)는 위사(僞史)·패사(霸史)라고도 일컬고 있으며, 왕통(王統)의 정운(正閏)을 이은 나라의 紀年을 쓰지 않고 자국(自國)이 만든 紀年을 참호(僭號)한 나라의 역사(歷史)를 뜻하는데, 「오월춘추(吳越春秋)」 「화양국지(華陽國志)」 「남당서(南唐書)」 등이 이에 속하며, 더욱이 「조선사(朝鮮史)」 「고려사(高麗史)」 등을 이에 분류(分類)하고 있음은 「중내경외(重內經外)」 「존비억피(尊批抑彼)」의 모순을 들어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該當)되는 요건(要件)이 없으므로 일찍부터 이 류문(類門)이 없다.

10. 시령류(時令類)

시령(時令)이란 一年中 기후(氣候)의 변동(變動) 상황(狀況)을 기록(記錄)했거나 이에 따른 연중행사(年中行事) 기(記) 즉(卽) 세시기(歲時記)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國家) 대사(大事)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였다.

령류(時令類)는 농사(農事)에 미치는 영향(影響)이 크다 하여 자부(子部)(농가류(類))에 편입(編入)시켜 왔으나 국가(國家) 전체(全體)와 관계(關係)가 큼을 고려하여 사부(史部)에 류문(類門)을 별설(別設)하였다.

우리나라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과 중국(中國)의 「일섭편(日涉編)」 「월령집요(月令輯要)」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 등은 모두 이에 속(屬)한다.

11. 지리류(地理類)

일명(一名) 흥지(輿地)라고도 하며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에 이르러 그 류문(類門)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인데 山川의 형세, 군현(郡縣)의 연혁(沿革), 각(各) 지방(地方)의 인물(人物)· 풍속(風俗)· 산물(產物)· 예문(藝文)· 고적(古蹟) 등을 수록한 것이다.

지리류(地理類)의 류문(類門)이 마련된 후 그에 관한 저술(著述)도 많아져서 여러 층으로 세분(細分)되었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총지(總志)· 도회군지(都會郡志)(方志)· 하거(河渠)· 변방(邊防)· 山川· 고적(古蹟)· 잡기(雜記)· 유기(遊記)· 외기(外紀)의 제속(諸屬)으로 분류(分類)되어 있으며, 後에 지리류(類)에 지도(地圖)의 속(屬)이 추가(追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대동방여지도(大東方輿地圖)」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도지(道志)」 「군지(郡志)」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 「송도고적지(松都古蹟地)」 「궁궐지(宮闕志)」 「금강산지(金剛山志)」 「설악산지(雪嶽山志)」 「대지지(大地志)」 「관동십경유기(關東十境遊紀)」 등과 중국(中國)의 「명일통지(明一統志)」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중국여지도(中國輿地圖)」 「산동통지(山東通志)」 「절강통지(浙江通志)」 「락양명원기(洛陽名園記)」 「수경주(水經注)」 「하방통의(河防通議)」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12. 직관류(職官類)

일조(一曹) 일사(一司)의 고사(古事), 경계(儆戒) 훈화지사(訓話之詞), 관제(官制)와 관잠(官箴), 장고(掌故)의 계고(稽考)와 격권(激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록한 것이다.

직관류(職官類)는 관제(官制)와 관잠(官箴)의 속으로 세분(世紛)되는데, 관제(官制)의 속(屬)에 분류(分類)할 수 있는 것 중 우리나라의 「조선관직고(朝鮮官職考)」 「경세유표(經世遺表)」 「도지지(度支志)」 「춘관지(春官志)」 「추관지(秋官志)」 등과 중국(中國)의 「당육전(唐六典)」 「한림지(翰林志)」 「비서감지(秘書監志)」 등을 들 수 있으며, 관잠(官箴)의 속(屬)에 분류(分類)할 수 있는 것 중 우리나라의 「임관정요(臨官政要)」 「목민심서(牧民心書)」 「거관대요(居官大要)」 「거관요람(居官要覽)」 등과 중국(中國)의 「백관잠(百官箴)」 「백료전감(百僚全鑑)」 「목민심감(牧民心鑑)」 「목진(牧津)」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13. 정서류(政書類)

육조(六曹)를 중심(中心)한 정사관계서(政事關係書)가 이에 분류(分類)되는데 서목(書目)에 따라서는 정법서(政法書)라고도 하나, 본래 구사(舊史)·고사(古事)·전고(典故)·과령(科令)이라고 바뀌어 불리었는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의주(儀註)·형법(刑法)과 함께 정서류(政書類)에 분류(分類)되었던 것이다.

이 정서류(政書類)는 통제(通制) 전례(典禮) 방계(邦計) 군정(軍政) 법령 외교 고공(考工)등의 제속(諸屬)으로 세분(世紛)되며 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통 제(通制)

문물제도일반(文物制度一般)과 역대(歷代) 제도(制度)에 관(觀)한 것이 이에 분류(分類)되는데,

문물제도(文物制度)에 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헌비고(文獻備考)」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憲通考)」 등과 중국(中國)의 「통전(通典)」 「속통전(續通典)」 「통지(通志)」 「문헌통고(文獻通考)」 「십통(十通)」 「구통(九通)」 등이 이에 속하며,

역대(歷代) 제도(制度)에 관한 것으로는 전대(全代) 또는 일대(一代)의 제도(制度)를 총괄(總括)한 것과 육직(六職)의 제도(制度)에 관(觀)한 법제장전(法制章典)이 포함(包含)된다. 우리나라의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등과 중국(中國)의 「한제고(漢制考)」 「오대회요(五代會要)」 「명회전(明會典)」 「흠정대청회전(欽定大清會典)」이 모두 이에 속한다.

나. 전례(典禮)

전례관계서(典禮關係書)는 이조(史曹)·예조(禮曹)가 맡아보는 제제(帝制)와 조정(朝廷)의 장전(章典)에 관계(關係)되는 자료(資料)가 이에 포함(包含)되는데, 우리나라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國朝喪禮)」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저궁책례도감의궤(儲宮冊禮都監儀軌)」 「즉황위대례도감의궤(卽皇位大禮都監儀軌)」 「송묘의궤(宋廟儀軌)」 「존호도감의궤(尊號圖鑑儀軌)」 등과 중국(中國)의 「정화오의(政和五儀)」 「신의(新義)」 「명전례지(明典禮志)」 「묘학전례학전(廟學典禮學典)」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다. 방계(邦計)

방계(邦計)관계서는 도지(度支)(호조(戶曹)가 맡아하던 전곡(錢穀)·호구(戶口)·식화(食貨)·재부(財賦)·조운(漕運)·철야(鐵冶)·염정(鹽政)·다마류(茶馬類)·개황(開荒)·구황(救荒)·활민(活民)등을 다룬 자료(資料)가 이에 포함(包含)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곡총록(國穀總錄)」 「도지전부고(度支典賦考)」 「공세요략(貢稅要略)」 「호구총록(戶口總錄)」 「부역실총(賦役實總)」 「금광략기(金鑛略記)」 등과 「철도(鐵道)」 「방계휘편(邦計彙編)」 「황정총서(荒政叢書)」 「개황십이정(開荒十二政)」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라. 군정(軍政)

군정관계서(軍政關係書)는 역대(歷代)의 양병(養兵)에 관(觀)한 자료(資料)가 이에 분류(分類)되며, 역대병제(兵制) 마정지(馬政志) 병마사(兵馬寺) 등이 이에 해당(該當)한다. 다만, 용병관계서(用兵關係書)는 후술(後術)할 자부(子部) 병가류(兵家類)에 편입(編入)되어야 하니 유의(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마. 법령(法令)

법령서(法令書)는 역대관서(歷代官署)의 율령(律令)(형법(刑法)·법령(法令)) 법전(法典) 및 사송(詞訟)·형옥(刑獄)(민사소송(民事訴訟) 형벌(刑罰))에 관(觀)한 자료(資料)를 말한다. 율령(律令)은 「당률(唐律)」 「대명률(大明律)」 「대청률(大清律)」 「육부율전(六部律典)」 「구한국법령(舊韓國法令)」 「법규류편(法規類編)」 등을 들 수 있고, 법전(法典)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송(詞訟)·형옥(刑獄)은 「사송류취(詞訟類聚)」 「결송류취보(決訟類聚補)」 「심리록(審理錄)」 「어정흠홀전칙(御定欽恤典則)」 「흠흠신서(欽欽新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검안(檢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法)의 이치(理致)를 사의(私議)한 관자(管子), 상자(商子), 신자(申子), 한비자(韓非子)같은 법가(法家)의 서(書)는 이에 분류(分類)하지 않고 자부(子部) 법가류(法家類)에 분류(分類)해야 한다.

바. 고 공(考工)

고공관계서(考工關係書)는 공작(工作) 또는 영조(營造)에 관한 자료(資料)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과학(技術科學)의 분야(分野)에 속(屬)하는 서류(書類)를 말한다. 「영조법식(營造法式)」 「성곽축조(城郭築造)」 「조전도설(造軛圖設)」 「조선기(造船紀)」 「조교량기(造橋梁紀)」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14. 목록류(目錄類)

목록관계서는 경적(經籍)(서목(書目))과 금석(金石)의 속(屬)으로 각각(各各) 구분(區分)되는데 서목(書目)에 따라서는 목록류(目錄類)(또는 서지류(書誌類) 목록(目錄)의 속(屬))와 금석류(金石類)의 류문(類門)을 각각(各各) 신설(新設)하여 분치(分置)하기도 한다.

목록은 경적지(經籍志) 예문지(藝文志) 등으로 통칭(統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서목(書目)과 통용(通用)되며 각종(各種)의 도서(圖書)를 기술(記述)하고 해제(解題)하여 체계화(體系化)시킨 자료(資料)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나려예문지(羅麗藝文志)」 「고사촬요책판목록(故事撮要冊板目錄)」 「해동문헌총(海東文獻總)」 「루판고(鏤板考)」 등과 중국(中國)의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 「구당서경적지(舊唐書經籍志)」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 「역대경적고(歷代經籍考)」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금석문(金石文)은 각종(各種)의 비문(碑文)과 석(石) 갑골(甲骨) 토(土) 소도(塑陶) 금속(金屬) 죽류(竹類) 등으로 된 제기(祭器) 식기(食器) 및 기타(其他)의 각종(各種) 기물(器物)에 새겨진 문자(文字)를 말하며 「갑골복사(甲骨卜辭)」 「은허문자의편(殷墟文字外編)」 등과 같은 도상(圖像)과 회화문자(繪畫文字) 등이 포함(包含)된다.

우리나라의 「각도세무관인장(各道稅務官印章)」 「건원릉표(建元陵表)」 「해동김석원(海東金石苑)」 등과 중국(中國)의 「은허문자류편(殷墟文字類編)」 「갑골복사(甲骨卜辭)」 「금속취편(金屬萃編)」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15. 사평류(史評類)

사평(史評)은 사체(史體)를 고변(考辨)하고 역사상(歷史上) 중요(重要) 사실(事實)에 대하여 논평(論評)한 자료(資料)이며 이는 춘추(春秋)에서부터 연원(淵源)하였다고 한다.

사평(史評)은 시대(時代)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가군자(假君子)·공양자(公羊子)·곡양

자(穀羊子)·체(替)·론(論)·서(序)·전(詮)·평(評)·독(讀)·술(術)·선(譏)·주(奏)·호(號)·사신(史臣) 등으로 통칭(統稱)되어 왔으며, 사평(史評)은 좌전(左傳)이나 또는 사기(史記)를 비평(批評)한 것의 이종(二種)으로 분류(分類)한다.

「과주론(過奏論)」 「변망론(弁亡論)」 「동채전의(東菜傳儀)」 「역대사론(歷代史論)」 「사통(史通)」 「통지총서(通志總序)」 「예문략(藝文略)」 「수교략(讐校略)」 「도보략(圖譜略)」 「문사통의(文事通儀)」 「사통삭번(史通削繁)」 등과 우리나라의 「역대사론(歷代史論)」 등이 이에 분류(分類)된다.

이상에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분류(分類)체계를 토대로 한 사부(史部)의 15門에 대한 분류(分類) 및 내용(內容)에 대하여 개관(概觀)하였다. 그러나 분류(分類)에 따라서는 사표류(史表類)를 별치(別置)하고 사부(史部) 정서류(政書類)에 외교(外交)의 속을 별치(別置)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에서 이에 대(代)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사표류(史表類)는 紀年류(類)를 뜻하며, 「아세아삼국력대(亞細亞三國歷代)」 「역대기년(歷代紀年)」 「흠정역대기사년표(欽定歷代記事年表)」 「기년아람(紀年兒覽)」 「동사년표(東史年表)」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되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사부(史部) 별사류(別史類)에 분류(分類)하였다.

외교서(外交書)는 제국(諸國)과의 외교관계서를 말한다. 이를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 표현해 왔는데 사대(事大)란 대중국(對中國)과의 외교서(外交書)이며, 교린(交隣)이란 중국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외교서를 뜻한다. 「일동기유(日東記遊)」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사화기략(使和記略)」 「선화진사고려도경(宣和秦使高麗圖經)」 「사대고례(事大考例)」 등은 모두 이에 해당(該當)된다.

D. 자부각류(子部各類)의 분류준칙(分類準則)

1. 유가류(儒家類)

공자(孔子)가 요순(堯舜)을 조술(祖述)하고 옛 선성(先聖)의 道를 집대성하여 易·時·書·禮·樂·春秋의 六經을 가지고 교(敎)를 삼았는데 항상 뜻을 육경에 두고 요순(堯舜)과 文·武王을 존숭(尊崇)하며, 공자(孔子)를 종사(宗師)로 받드는 유학파(儒學派)를 말한다. 이 학파에는 경학파(經學派), 주자학(朱子學)(성리학(性理學))파(派), 양명학파(陽明學派), 고증학파(考證學派)와 우리나라의 실학파(實學派)가 있다.

경학파(經學派)의 「신어(新語)」 「신서(新書)」 「회남자(淮南子)」 와, 주자학파(朱子學派)의 「태극도설(太極圖說)」 「소학집주(小學集註)」 와, 양명학파(陽明學派)의 「전습록(傳習錄)」 과, 이학파(理學派)의 「용촌어록(榕村語錄)」 과, 우리나라 실학파(實學派)의 저술(著述)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또한 다른 유가(儒家)의 저술(著述) 또는 연구서(研究書)를 번역(翻譯)·주석(註釋)·안석(按設)·비평(批評)을 가한 것도 모두 여기에 분류(分類)한다.

다만 주자학적(朱子學的) 견지(見地)에서 쓴 「소학(小學)」은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분류(分類)하나, 자서(字書)로서의 「소학류(小學類)」 즉(卽) 훈고(訓詁)·자서(字書), 운서(韻書) 및 훈몽용(訓蒙用) 한자교습서(漢子敎習書)는 경부(經部) 소학류(小學類)에 편입(編入)함을 명심(銘心)하여야 한다.

2. 병가류(兵家類)

병서(兵書)는 용병(用兵)에 관하여 론(論)하는 것을 위주(爲主)로 한 자료(資料)로서 전법(傳法)과 병술(兵術)에 관한 저서(著書)가 포함(包含)된다. 고대병서(高大兵書)인 「육도(六韜)」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등과 후대(後代) 저서(著書)인 우리나라의 「병장설(兵將設)」 「병학통(兵學通)」 「병학지남(兵學指南)」 등과 중국(中國)의 「무편(武編)」 「화기도(火器圖)」 「연병실기(練兵實記)」 등이 모두 이에 속(屬)한다.

다만 역대(歷代)의 양병제도(養兵制度)에 관한 군정서(軍政書)는 사부(史部) 정서류(政書類) 군정(軍政)의 속에 분류(分類)함을 상기(想起)하여야 한다.

3. 법가류(法家類)

법가서(法家書)는 고대인(古代人)의 법률(法律)의 원리에 대한 이론서(理論書)를 말하며, 「관자(管子)」 「상자(商子)」 「신자(申子)」 「신자(慎子)」 「한비자(韓非子)」 등이 이에 분류(分類)된다.

다만 관제(官制) 또는 법령서(法令書)는 이에 분류(分類)하지 않고 사부(史部) 정서류(政書類) 법령(法令)의 속에 분류(分類)함을 기억(記憶)하여야 할 것이다.

4. 농가류(農家類)

고대(古代) 농학과(農學派)의 저술(著述)을 말하는데 전(傳)해지는 것은 없고, 후대(後代)에 저술(著述)된 것뿐이며 우리나라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종저보(種譜譜)」 「잠상촬요(蠶桑撮要)」 등과 중국(中國)의 「농정전서(農政全書)」 「야채박록(野菜薄祿)」 등의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5. 의가류(醫家類)

한의경(漢醫經), 한의진단(漢醫診斷), 한의각과학(漢醫各科學), 한의위생학(漢醫衛生學), 한의약학(漢醫藥學), 침구학(鍼灸學) 등 동양의학(東洋醫學)에 관한 자료(資料)로서, 우리나라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 「본초강목(本草綱目)」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되며, 또한 「수우경(水牛經)」 「료마집(療馬集)」 등 가축(家畜) 치료(治療)에 관한 서술(敘述)도 이에 포함(包含)된다.

다만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전(傳)하는 방중술(房中術) 또는 신선술(神仙術)에 관한 저작(著作)은 도가류(道家類)에 분류(分類)됨을 혼돈(混沌)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천문학(天文學) 관계(關係) 자료(資料)와 고대산법(算法)에 관한 산서(算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천문학(天文學)은 천체(天體) 운행(運行)을 관측(觀測)하는 추보(推步),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징후를 예견(豫見)하여 정사(政事)에 참고(參考)하던 자료(資料) 및 역법(曆法)·고의기(古儀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천동상위고(天東象緯考)」 「제가력상고(諸家曆像考)」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 「교식통궤(交食通軌)」 「의기집설(儀器輯設)」 「간평의설(簡平儀設)」 「천세력(千歲歷)」 「만세력(萬歲曆)」 등과 중국(中

國)의 「육경천문편(六經天文編)」 「천학회통(天學會通)」 「어정력상고성(御定曆象考成)」 「대통력(大統曆)」 「칠정산편(七政算編)」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되나, 다만 점성법은 술수류(術數類)에 분류(分類)됨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고대의 각종산서(算書)인 우리나라의 「산술관견(算術管見)」 「산학정의(算學定義)」 등과 중국의 「손자산경(孫子算經)」 「수학구장(數學九章)」은 모두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에 분류(分類)한다.

7. 술수류(術數類)

음양(陰陽) 복서(卜筮) 등에서 길흉(吉凶)을 점치는 동양(東洋)의 독특(獨特)한 비학(秘學)으로 역(易)의 일지파(一支波)이다. 이 술수서(術數書)를 대별(大別)하면 수학(數學)(술학(術學)) 점후(占候) 상택상묘(相宅相墓) 점복(占卜) 명서(命書)·상서(相書) 음양오행(陰陽五行), 잡기술(雜技術)로 구분(區分)된다.

수학(數學)(술학(術學))은 만물(萬物)이 생하면 반드시 상(象)이 있고 상(象)이 생기면 반드시 수(數)가 있으니, 이를 곱하고 나누어 추문(推聞)해서 천지(天地) 조화(造化)의 근원(根源)을 구명(究明)하는 것으로서, 「역학(易學)」 「천원발미(天原發微)」 등이 이에 속한다.

점후(占候)는 구름의 모양·빛·움직임 등을 보고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대비원(靈臺秘苑)」 「천문비략(天文秘略)」 「성점(星占)」 「천문력(天文曆)」 등이 이에 속한다.

상택상묘(相宅相墓)는 풍수지리(風水地理)의 도참사상(道讖思想)에 근거하여 지상(地相) 택상(宅相) 묘상(墓相) 등의 길흉(吉凶)을 가름하는 것인데 풍수도참(風嗽道讖)이라고도 하며, 「택경(宅經)」 「장서(葬書)」 「산법전서(山法全書)」 등이 이에 속한다.

점복(占卜)은 만사의 선악(善惡)과 길흉(吉凶)에 대한 미후(微候)를 점으로 판단(判斷)하거나 복서(卜筮) 등으로 지난 일에 의심(疑心)이 있을 때 그 대책(對策)을 결정짓는 것을 말하는데, 「복법상고(卜法詳考)」 「상주육임단경비결(詳註六壬斷經秘訣)」 등이 이에 속한다.

명서(命書)·상서(相書)는 합해서 명상(命相)이라 부르며 운명(運命)을 판단(判斷)하는 명서(命書)와 면상(面相) 수상(手相) 골상(骨相) 및 명상(名相)등의 상서(相書)를 뜻하는데,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삼명통회(三命通會)」 「천기대요(天機大要)」 「선택기요(選擇紀要)」 등이 이에 속한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우주(宇宙)나 인간사회(人間事會)의 모든 현상(現像)을 음(陰)과 양(陽)의 두 원리(原理)의 소장(消長)으로부터 설명(說明)하는 음양설(陰陽說)과 이 영향(影響)을 받아 만물(萬物)의 생성(生成) 소멸(消滅)을 木·火·金·水의 변전(變轉)으로부터 설명(說明)하려는 오행설(五行說)이 있는데, 「태기성서(太己成書)」 「오행류사점미험(五行類事占微行)」 「협길통의(協吉通義)」 「토정비결」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잡기류(雜技類)는 후세에 생긴 것이나 道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도 잡기류를 수록하고 있으나 취할 만한 것이 없다.

8. 예술류(藝術類)

예술류는 서화(書畫) 금보(琴譜) 전각(篆刻) 잡기(雜技) 등으로 구분(區分)된다. 서화

(書畫)는 서예와 회화(繪畫)가 포함(包含)되는데 「죽석진교서점(竹石秦敎書帖)」 「서법정전(書法正傳)」 「선화화보(宣和畫譜)」 「청대화집(清代畫集)」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다만 문방사우(文房四友) 또는 필(筆) 목(墨) 지(紙) 연(硯)의 연구서(研究書) 즉 「문방사보(文房四譜)」 「평지첩(評紙帖)」 「필사(筆史)」 「연록(硯錄)」 등은 보록류(譜錄類) 기용(器用)의 속에 분류(分類)함을 주의(主意)하여야 한다.

금보(琴譜)는 거문고의 곡조를 적은 악보로서 「금보(琴譜)」 「금사(琴史)」 등은 이에 속한다.

전각(篆刻)은 나무, 돌, 금옥(金玉) 등에 인장(印章)을 새기는 것을 말하며, 흔히 전자(篆字)를 사용(使用)하기 때문에 유래된 말인데, 「근역인(楨域印) 수(藪)」 「인사(印史)」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잡기예(雜技藝)에는 장기(將棋), 바둑, 무예(武藝) 등으로 분류(分類)되는데 「원원기경(元元棋經)」 「기결(棋訣)」 「혁사(弈史)」 「사서(射書)」 「사의신서(射義新書)」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9. 보록류(譜錄類)

事一物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조사(調査)·연구(研究)하여 계계(系係)있게 정리된 것은 모두 이 보록(譜錄)에 분류(分類)하는데, 기용(器用), 식보(食譜), 초목(草木), 조수충어(鳥獸虫魚)의 속으로 구분(區分)한다

기용(器用)은 문방사우(文房四友) 등 용기(用器)에 대한 개별적(個別的)인 전문연구서(專門研究書)로서 「문방사보(文房四譜)」 「평지첩(評紙帖)」 「필사(筆史)」 「묵지(墨志)」 「연록(硯錄)」 등이 이에 속한다.

보(食譜)는 가정(家庭)의 일용(日用) 음식(飲食)에 대한 일품(一品)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연구(研究)한 것으로, 「소식보(疏食譜)」 「주보(週譜)」 「음선고(飲膳考)」 「찬사(饌史)」 「다보(茶譜)」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초목(草木)·조수충어(鳥獸虫魚)는 동(動)·식물(植物) 중(中) 특정(特定)의 一物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조사(調査) 연구(研究)한 것으로, 「국보(菊譜)」 「송보(松譜)」 「난보(蘭譜)」 「상보(桑譜)」 「해보(蟹譜)」 「사보(蛇譜)」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一事一物을 전문적(專門的)으로 다루지 않고 중품(衆品)을 잡진(雜陳)한 것은 잡가류(雜家類) 잡품(雜品)의 속에 분류(分類)함을 착오(錯誤)하여서는 안된다.

10. 잡가류(雜家類)

유가(儒家), 목가(墨家), 명가(名家), 법가(法家) 등 제가(諸家)의 설(設)을 종합참작(綜合參酌)한 학설 또는 그 학과를 말하는데, 이는 잡학(雜學) 잡고(雜考) 잡설(雜說) 잡품(雜品) 잡찬(雜纂) 잡편(雜編)의 속으로 구분(區分)한다.

잡학(雜學)에는 유(儒)·목(墨)을 겸하고 명(名)·법가(法家)의 설(設)을 합(合)하여 일설(一說)을 이룬 저서(著書)는 이에 분류(分類)되는데, 목가(墨家)의 저서 「묵자(墨子)」 「안자(晏子)」 「고자(告子)」 등과, 고대(古代) 명가(名家)의 저서 「등석자(鄧析子)」 「윤문자(尹文子)」 등과, 종횡가(縱橫家)의 저서(著書) 등은 모두 자부(子部) 잡가류(雜家類) 잡학(雜學)의 속에 분류(分類)한다.

잡고(雜考)는 제설(諸說)을 포괄(包括)하여 어느 일속(一屬)에 한정(限定) 시킬 수 없는 것으로, 「곡제수필(谷齋隨筆)」 「고금고(古今考)」 「일지록(日知錄)」 등이 이에 속

한다.

잡설(雜說)은 자기(子器)의 의견(意見)을 개진(開陳)하고 혹은 속와(俗論)를 정정(訂正)하였으며 혹은 근문(近聞)한 것을 기술(記述)하고 혹은 고의(古義)를 종합(綜合)한 것을 후인(後人)이 필기(筆記)하여 유전(遺傳)한 설(設)이다. 이는 수의록재(隨意錄載)한 것이므로 일정(一定)한 편찬(編纂) 체재(體裁)를 갖추지 못했다. 「필기(筆記)」 「몽계필담(蒙溪筆談)」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잡품(雜品)은 여러 가지 사물(事物)을 잡다하게 설명(說明)한 것으로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 「격고요론(格古要論)」 「장물지(長物志)」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잡편(雜編)은 증설(衆說)을 모아 성편(成編)하고 구문(舊文)을 류집(類輯)하여 도찬(塗竄)한 것으로 「의림(意林)」 「문원영화초(文苑英華鈔)」 「교육류찬(教育類纂)」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잡편(雜編)은 여러사람의 저작(著作) 또는 제가(諸家)의 잡기(雜記)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규장각총서」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 등과 중국(中國)의 「당송총서(唐宋叢書)」 「사고전서(四庫全書)」 「사부총간(四部叢刊)」 등은 이에 속한다. 또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울곡전서(栗谷全書)」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등과 같이 一個人이 자편(子編) 또는 자저(子著)한 것도 이에 포함(包含)한다.

11. 류서류(類書類)

많은 사항을 총망라(總網羅)한 백과사전격의 전서(全書)는 經·史·子·集의 사부내(四部內)에 어느 곳에도 분류(分類)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지봉류설(芝峯類設)」 「성호사설(聖湖僿設)」 「고사촬요(故事撮要)」 등과 중국의 「북당서초(北堂書鈔)」 「예문류취(藝文類聚)」 「백공육첩(白孔六帖)」 「운부군옥(韻府群玉)」 「사문류취(事文類聚)」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12. 소설가류(小說家類)

패관(裨官)이 가담항어(街談巷語)를 도청도설(道聽塗說)하여 기록(記錄)한 것을 말하는데, 잡사(雜事) 이문(異聞) 쇠어(瑣語)의 속으로 구분(區分)된다.

잡사(雜事)는 향간(巷間)의 일화(逸話)와 고사(故事)를 주관적(主觀的)으로 기록(記錄)한 것인데 「세설신어(世說新語)」 「산거신어(山居新語)」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역조(歷朝)의 군정(軍政)을 사실(事實)대로 쓴 것은 잡사(雜史)로 다루어야 함을 주의(主意)하여야 한다.

이문(異聞)은 괴이(怪異)하고 신기한 내용(內容)의 것으로 「집이기(集異記)」 「박이기(博異記)」 등이 이에 속한다.

쇠어(瑣語)에는 「광골계(廣滑稽)」 「십처사전(十處士傳)」 등이 속한다.

13. 석가류(釋家類)

불교(佛敎)는 석가모니(釋迦牟尼)가 개종(開宗)한 종교(宗教)로 佛·法·僧으로 성립(成立)되어 있다. 불교(佛敎)의 내용(內容)은 經·佛·論의 삼장(三藏)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대장경(大藏經)이라고 부른다. 經·佛·論은 물론 삼장(三藏)에 대한 소(疏)도 모두 이에 분류(分類)한다. 삼장(三藏)에 관한 소(疏), 불교 각종파에 관한 책, 불교의식 관계 자료, 법수(法數), 각의집(各義集)·음의(音義)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생애(生涯)

등은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E. 집부각류(集部各類)의 분류(分類)준칙(準則)

1. 초사류(楚辭類)

초사(楚辭)란 초(楚)나라의 굴원(窟原)과 그 문하생(門下生)들 및 후세인(後世人)들이 지은 고대부(古代賦)를 말한다. 부(賦)란 사물(事物)을 접(接)하여 감상(感想)을 느끼는 그대로 적는 한시체(漢詩體)의 한가지로서 후세(後世)에 와서 이를 「소(騷)」 또는 「리소(離騷)」라 했다. 현전(現傳)하는 것은 고대(古代)의 것으로 한정(限定)되어 있고 다만 후인(後人)의 주해(注解)와 보주(補注) 등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중국(中國)의 「초사(楚辭)」 「초사장구(楚辭章句)」 「초사보주(楚辭補注)」 「초사집주(楚辭集注)」 「리소경주(離騷經注)」 「리소해(離騷解)」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2. 별집류(別集類)

개인(個人)의 문집(文集)이며 한시(漢詩)·문에 속(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익제선생문집(益齋先生文集)」 「고봉집(高峰集)」 「금릉집(金陵集)」 「매월당집(梅月堂集)」 「사구문집(四奎文集)」 등과 중국(中國)의 「도연명집(陶淵明集)」 「이태백집(李太白集)」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3. 총집류(總集類)

2人 이상의 문집(文集)을 한데 모아 간행(刊行)한 총집(總集) 또는 선집(選集)으로 담시(淡詩)·문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동문선(東門選)」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 「생육신합집(生六臣合集)」 「열성어제(列聖御製)」 등과 중국의 「문선(文選)」 「송문선(宋文選)」 「당송팔대가문선(唐宋八大家文選)」 등이 모두 이에 속(屬)한다.

4. 시문평류(詩文評類)

시평(時評), 시(詩), 문합평(文合評)으로서 우리나라의 「동인시화(東人詩話)」 「운창시화(芸窓詩畫)」 등과 중국(中國)의 「시품(詩品)」 「두시비해(杜詩批解)」 「문장연기(文章緣起)」 「문설(文設)」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5. 사곡류(詞曲類)

사(詞)는 락부시(樂府詩)계통의 시가이나, 당대(唐代)에 들어와 근체시(近體詩)가 발달하면서 詩는 옛날의 노래가사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완전(完全)히 읊고 읊는 시(詩) 즉(卽) 사(詞)가 되고, 이것이 또다시 曲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림별곡」 「죽계별곡(竹溪別曲)」 「쌍화점(雙花店)」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국조악장(國朝樂章)」 「자궁악장(慈宮樂長)」 「송강가사(松江歌辭)」 「악장가사(樂章歌詞)」 「해동악부(海東樂府)」 등과 중국의 「고금사화(古今詞話)」 「악장집(樂章集)」 「송명가사(宋名歌辭)」 「옥산사(玉山詞)」 등이 모두 이에 분류(分類)된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이를 다시 사집(詞集), 사선(詞選), 사화(詞話), 사보(詞補), 사운(詞雲), 남북곡(南北曲)의 속(屬)을 두어 정리하고 있다.

4. 결 어(結 語)

이상(以上)에서 목록(目錄)의 중요성(重要性)과 고서(古書) 분류(分類)의 발전(發展) 과정(過程) 및 제반준칙(諸般準則)을 개관(概觀)했다.

시대별(時代別)로 도서분류(分類) 방법(方法)이 변천하는 것은 조직(組織)된 자료의 량(量)과 성격(性格)에 따라 적절한 분류(分類) 방법(方法)을 채택(採擇)·고안(考案)·수정(修正)하여 활용(活用)하기 때문이다.

고서(古書)를 선인(先人)들의 학술(學術) 활동(活動)의 총화(總和)이기 때문에 고서(古書)를 분류(分類)한다 함은 선인(先人)들이 이룩해놓은 학문의 범주를 통정(統整)한다는 결과(結果)가 되며, 또 학문(學問)은 시대(時代), 당대(當代)에 존숭(尊崇)되던 사상(思想), 또는 배경에 따라 주류(主流)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작(著作)의 성격(性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작(著作)의 성격(性格)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구성(構成) 자료(資料)가 시대적(時代的)·양적(量的)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분류(分類)함에 있어 고정된 분류법(分類法)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알맞는 분류(分類)법을 채택,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칠분법(七分法)과 사분법(四分法)이 병용(並用)되면서, 칠분법(七分法)인 칠략(七略) 칠지(七志) 칠록(七錄)이 먼저 발전을 보고, 사분법(四分法)인 사부(四部)분류(分類)법이 뒤에 완성되었다.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은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나, 이것 또한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에 부응하여 개수사부분류법(改修四部分類法)이 대두된다. 거듭 강조(強調)하거니와 분류법(分類法)이 변천하는 것은 조직(組織)된 자료(資料)의 성격(性格)과 양(量)에 주(主)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고서(古書) 보존(保存)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圖書館)이나 고전적(古典籍)을 문화재적(文化財的) 측면(側面)에서 관리(管理)하는 도서관(圖書館)에서는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활용(活用)하도록 권장한다.

參考文獻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
崔淳熙, 四部分類法에 대한 研究노트
四庫全書總目
漢書藝文志
唐書經籍志
奎章閣韓國本目錄
藏書閣所藏韓國本總目錄